

p. 477: “1) 직종별(직능별) 노조(craft union)”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1) 직종별(직능별) 노조(craft union)

동일한 직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유형의 노조를 말한다. 직종별 노조는 근로자 자신의 기능·기술에 대한 이익(기능·기술의 유지와 일정수준의 임금의 유지·개선)을 옹호하기 위하여 기업과 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광범한 지역에 걸쳐 조직되는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의 고전적 조직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직유형의 장점으로는 첫째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제안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단결력이 강고하여 어용화의 위험이 적다는 점, 셋째 직장단위의 조직이 아니므로 실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첫째 근로자인 조합원과 사용자와의 관계가 희박하다는 점, 둘째 배타적이고 독점적 성질을 가진 조직이어서 근로자 전체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다는 점, 셋째 교섭상대방이 복수이고 유동적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